파주금촌 금호어울림 임차인 모집공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파주시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대상 : 전용면적 26㎡~59㎡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50세대 (특별공급 170세대, 일반공급 680세대)
■ 사업주체 : (위)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 공 사 : 금호건설(주)

■ 당사는 홈페이지(http://www.pjkhapt.com)을 운영합니다. 당첨자 모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청약접수는 청약홈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공동주택 1,055세대 중 850세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그 외 세대의 공급에 관하여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당 사업은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위)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주체이며,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는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특성 상 준공 후 이전고시,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등의 과정이 즉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임차인, 입주 시점에도 당사 임대주택 850세대에 대한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당사는 조합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 입주 등의 문제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호수는 현재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매매계약서상 동번호 및 세대호수로 준공 과정에서 동번호 및 세대호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호수가 변경될 경우 청약자가 당첨된 세대의 호수와 동번호가 당첨시점과 계약시점 또는 입주시점 각각 상이할 수 있으나 당첨된 세대와 무관하게 동일한 면적의 다른 세대로 배정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 파주금촌 공공어울림 아파트 브랜드인 금호어울림은 시공사인 금호건설(주)의 브랜드 아이앤티티로 임대사업주체인 (위)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브랜드 아이앤티티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공동주택 매매계약을 통한 소유주로서의 단지명 사용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임차보증금 납부를 위한 임차인 대출 지원 및 연계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가능여부는 임차인 본인이 사전에 확인 후 청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내 상담전화(☎ 031-957-8005)를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접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주)대명개발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시행규칙 14조의11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건(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5.06.25.(수)이며, 이는 청약자격 조건(청약신청자 나~다)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5.06.25.(수)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 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 특별공급 대상자
- 청년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신혼부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고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항 1호 및 등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주택형에 따른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 전 총 임대보증금과 계약금의 차액을 납부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차인 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 1호 및 등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일부터 2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유효합니다.
- 단, 2년 단위 계약 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 상승률(전상승분은 계약 갱신시 일괄 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한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가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지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최초 계약시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중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선택한 임대조건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 ~ 2개월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환 임대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율 : 전환율 : 26㎡ 5.2%, 46㎡ 4.7%, 59㎡ 4.5%)

(단위 : 세대, 원)

구분		공급세대수	표준임대료		선택형1		선택형2	
공급유형	주택형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특별공급	26A	170	10,000,000	355,000	3,000,000	385,000	35,000,000	247,000
	26B	221	25,000,000	365,000	15,000,000	408,000	45,000,000	278,000
일반공급	46	197	69,000,000	425,000	83,000,000	370,000	105,000,000	284,000
	59A	202	89,000,000	497,000	120,000,000	381,000	145,000,000	287,000
	59B	60	89,000,000	497,000	120,000,000	381,000	145,000,000	287,000

3 신청자격, 접수처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선발인원 (계약호실)	신청자격 및 접수처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170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5.(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청약홈" 검색)	• 청년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 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신청이 미달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세대수의 300%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선발인원 (계약호실)	신청자격 및 접수처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680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5.(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2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이 주택은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 불가)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도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하며 부적격자로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택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이전, 소득 및 자산보유액, 가족지역 등에 관계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일 전까지 계시판 이외의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정부시행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청약홈" 검색)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게시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날은 주택(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이 최초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입주자지정기 개시일 이후에도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정부시행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청약접수 일정, 신청방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청년)	2025.06.30.(월) 09:00~17:30	인터넷 청약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이용시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검색	10만원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 이체가능금액 확인 필요)	2025.07.03.(목) 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일반공급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상기 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 명단은 상기 청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하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체결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5.07.05.(토) ~ 07.13.(일) 10:00~17:00	당사 주택홍보관
당첨자 계약 체결(특별공급, 일반공급)	2025.07.14.(월) ~ 07.17.(목) 10:00~17:00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73(금촌동)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8]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절차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세부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장려통정 사항 및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당첨자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지 않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입금	본인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차계약용(본인 발급용)
	○		4.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필요하며, 가능하시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5.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 중명서)
	○		6. 주민등록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7.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9.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10. 주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비사업자확인자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주택홍보관 비치
특별공급 유형 청년	○		3.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		4.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5.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6.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자서	본인	• 소득 관련 가구원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한 경우 • 임신이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이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당일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자서 : 주택홍보관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차계약용(본인 발급용), 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5.(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이 당첨으로 인한 당첨자도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시간단위, "매월신고 납부대상자원"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확인)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급여조 신규취업자 또는 급여조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급여조 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원"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확인)서	ⓐ,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사정통 기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기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분 재무제표, ⓒ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급여조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신청용 기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주택홍보관 비치) ② 사실증명원(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확인) * 위자자의 경우 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까일까지의 모든 소득 서류	ⓐ 주장소 ⓑ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임직원,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가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근무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근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고시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더표자가 작성하는 소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등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인데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1005-603-888365	(위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

- 무통장입금시 동,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101-1301동2동)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닌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홈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권리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은 는 계약이체 영수증은 계약이체 영수증은 계약이체 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은 도 계약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
-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하고금은 입주 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월세의 납부금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이자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료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정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연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임대료 납부계좌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입주 전 별도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6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시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사전방문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신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입주지정기간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정하며 입주 개시일 이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발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여야 본인귀책 사유로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입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퍼센트 25를 "임대인"에 일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대보증금 보증안내(장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시전평 정보 제공 : 임대보증금 발생 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시전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사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일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근로자	급여조 신규취업자 또는 급여조 전직자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택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택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택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 적성시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주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공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공 신고증명서] 공공신고대